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나. 의안번호 : 제2239호

다. 제출일자 : 2021. 2. 16.

라. 회부일자 : 2022. 2. 17.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 철도공사는 진접선 복선전철의 원활한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서로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체결함
- 이에 따라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설치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코자하며 본 위·수탁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편성 및 사업비 부담 등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협약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4호선 연장(진접선) : 국토부 시행】

- 구 간 : 노원구 당고개역 ~ 남양주시 진접읍
- 규 모 : 14.8km(서울 2.07, 경기 12.71), 정거장 3개소(경기도)
- 사 업 비 : 9,226억원(국가 75%, 서울시 25%)
- 사업기간 : 2015~2021년('21.12월 개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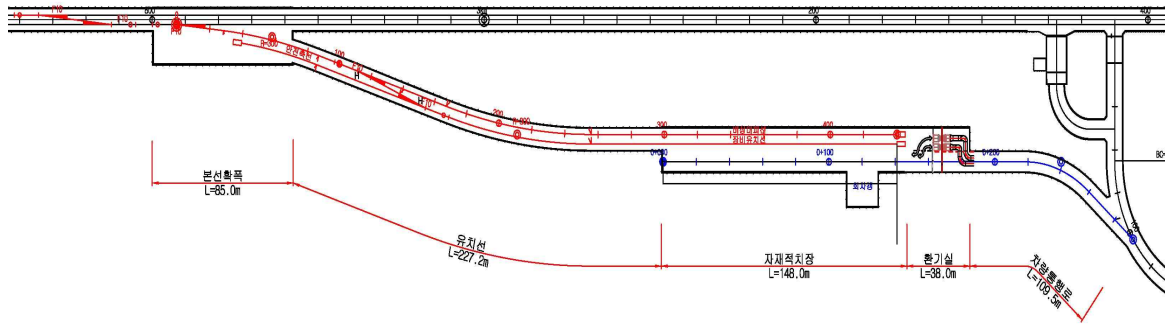
【진접차량기지 건설 : 서울시 시행】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40-4 일원
- 규 모 : 197,400 m^2
- 사 업 비 : 5,335억원(서울시)
- 사업기간 : 2015~2025년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 서울시 시행】

- 위 치 : 진접선 1공구 경사갱 (남양주시 별내동 산255)

- 규 모 : 비상대피 및 자재유치선 607m(지하), 지상 현업사무실 1동
- 시설 배치도: 옥내시설(비상대피선, 장비유치선 신설 등)



〈운영필수시설 현황〉

- ▶ 비상대피선 : 장애, 사고차량 등을 견인하여 유치
- ▶ 특수차 유치선 : 모타카, 레일연마차, 분진흡입차, 자갈흡입차 등
- ▶ 자재적치장 : 레일, 자갈-콘크리트도상 변경을 위한 자재 등 기타 유지관리자재
- ▶ 협업사무실 : 특수차 운전원, 유지관리(비상복구) 직원 등 상주 공간

나. 그간 추진경위

- '13.12.19.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5. 9.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 본선 건설: 철도공단, · 차량기지 건설: 서울시, · 운영: 서울교통공사
- '18. 9.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 '19. 2~10. :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협의(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등)
 - 공사는 진접선 본선과 인접시공으로 공단에 위탁 (협약 작성)
- '19.10.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시→대광위)

- '20. 2~9.23.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등)
- '20. 9.29. : 관계기관 합의서 체결
 - 합의기관 : 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 진접선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
- '20.10.~'21. 1. : 주민 민원대책 및 위·수탁 협약(안) 협의
(남양주시, 철도공단 등)
- '21. 1.~ : 운영필수시설 이전 관련 시의회 사전 보고

다. 사업추진체계

- (위·수탁사업) 진접선 본선과 인접시공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시행
 - 서울시-국가철도공단간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 체결

라.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총 791억원
- 소요 사업비는 설계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주요 협약내용

- 협약개요
 - 협약서명 : 서울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위탁기관) - 국가철도공사(수탁기관)
- 협약목적 :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이 목적

○ 주요내용

-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며, 소요비용은 서울시가 부담
- (사업위치) 공사의 위치는 진접선 본선터널에서 분기하여 경사갱 방향 전환소까지 독립터널을 연결하고 경사갱 외부에 주재소 설치
- (수탁사업 범위 및 규모) 본선터널 확폭부 및 유치선 터널 607m, 궤도작업장 1,410 m^2 , 터널외 시설: 자재적치장 및 주재소(설계) 1,700 m^2
- (업무분담) 공사에 따른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처리

1. 서울시의 업무

- 사업비 전액 부담(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공사시행에 따른 인·허가처리 및 민원 처리 협조

2. 공단의 업무

- 설계 및 공사시행
- 준공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은 설계결과, 공정율에 따라 협의 조정
 - (시설의 취득, 유지관리) 준공 또는 사용개시와 동시에 인계인수하며, 이후 유지관리는 서울시가 시행
 - (사업비 정산) 공사완료 후 6개월 이내 사업비 집행결과 및 수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정산
- 협약기간 :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사업 완료까지 유효
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발생
 - 향후일정 : '21. 2. 위·수탁 협약 체결(市-국가철도공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24조, 국가철도공단법 7조

○ 도시철도법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기계·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나. 예산조치 : 21년 추경예산 편성

다. 첨부자료 : 합의서 1부.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이 함께 건설하는 4호선 연장(이하 “진접선”) 건설사업 중 기존 창동차량기지에 계획된 운영 필수시설이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4호선 및 진접선 유지관리를 위한 이전에 대해 관계기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진접선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관련 규정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진접선 및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현황

- 진접선은 4호선(오이도~당고개)의 당고개역 종점을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연장 14.8km, 정거장 3개소로 이어진 복선 전철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중이며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공사중에 있음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는 4호선을 연장함에 따라 기존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를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차량기지 197,400 m^2 , 입·출고선 4.9km, 진입도로 1.14km 규모로 구성되어 현재 서울시가 전 구간 공사 중임

※ 참고 : 진접선 및 진접차량기지 노선도

구 분	진접선 본선구간	진접차량기지 건설	4호선 운영필수시설
시행자	국토부 (시행 :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서울시
구 간	노원구 당고개역 ~ 남양주시 진접읍	노원구 상계동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진접선 1공구 경사갱(남양주시 별내동)
규 모	14.8km	197,400 m^2	비상대피 및 자재유치선 607m, 현업사무실 1동
사업비	9,226억원 (국가 75 : 서울시 25)	5,335억(서울시)	총 791억원*

* 식송마을 우회도로 사업비(64억원) 제외

■ 운영필수시설 이전 경위

- 동 동의안에서 말하는 ‘운영필수시설’이란 철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노후시설개량, 운영 중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특수차 유치선을 비롯하여 사고차량을 위한 비상대피선, 각종 유지관리 자재를 위한 자재적치장 등을 말하며 현재는 창동차량기지 내 장비유치선과 자재적치장 등을 활용하여 운영 중임
- '13년 진접선 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에서 창동차량기지가 진접읍으로 이전될 경우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4호선 구간의 유지보수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¹⁾ 대피선, 철도장비 유치선 및 야적장을 창동차량기지 주변 입·출고선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창동차량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²⁾이 고시되면서 운영필수시설을 차량기지 주변에 배치할 경우 도시재생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1) 국토교통부,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13.12

- 서울메트로 의견 : 궤도연장 증가로 인한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 발생

- 4호선(총연장 32.2km) 차량기지는 창동차량기지가 유일하여 서울역 남단구간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 추진에 문제발생(궤도공사 시 차량기지내에서 모터카 투입으로 궤도재료운반 및 궤도도상 개량시 문제점 발생

- 창동차량기지의 이전계획에 따라 대피선, 철도장비유치선, 야적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창동차량기지의 인입선 및 기지내 여유부지 이용으로 설치·검토

2)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 고시번호 : 2017-77호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 5동 및 노원구 상계2, 6·7, 10동 일원

- 면적 : 약 982,839㎡

- 비전 :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일자리·문화 중심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 목표 : 지식형첨단산업, 문화산업 등 특화산업기반 구축, 대규모 공연시설 아레나 유치로 문화예술 기반 구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KTX연장 등 광역 및 지역인프라 구축으로 교통체계 개선

- 이후 서울시는 진접선 본선 구간 경사궤³⁾을 활용하여 운영필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⁴⁾하고 본선사업자인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남양주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0년 9월 운영필수시설 이전(창동→별내동)에 대한 관계기관 합의서⁵⁾를 체결하였음



- 합의를 통해 진접선 1공구 경사궤를 활용한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본선구간의 공사를 시행중인 국가철도공단은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따른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서울시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3) 비상차량 운행 및 승객의 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 (3.4km)

4)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경사궤 은근 설치에 따른 설계과업범위 등 자료 제출(서울시 교통정책과 -19036),2018.7

5)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합의서

- 합의일자 : 2020.9.29.

- 합의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시,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 주요내용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3)과 4호선 및 진접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필수시설 이전(창동→별내동)을 서울시에서 요구, 국토부와 공단이 중재하여 추진**
- 공단은 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접선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서울시와 공단은 운영필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운영필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 동 사업이 “예산 외 의무부담” 대상으로 의회 동의 대상인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의 사무를 적용범위로 두고 있음

※ 참고 : “예산 외 의무부담”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39조(지방자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 (생략)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 5. (생략)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 동 동의안에 첨부된 위·수탁 협약서 제5조 및 제8조를 살펴보면⁶⁾ 서울시는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되, 사업비는 국가철도공단의 설계 결과 및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총사업비를 확정된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는 운영필수시설 사업비가 확정·의결되지 않았으나 협약체결 후 서울시 예산편성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부담” 및 “예산 외 사무”로 볼 수 있고, 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시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⁷⁾을 제시한 바 있음

6) 서울 지하철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업무분담) “이 공사”에 따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1. “서울시”의 업무

가. 사업비 전액 부담 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계획 등 각종 인허가 처리

다.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라.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처리 협조

마.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 처리 협조 바. 시설물 인수·인계와 동시에 시설물 귀속 및 유지 관리

제7조(사업비의 책정 및 조정) ① “이 공사”의 총사업비는 추정사업비 780억원(사업관리비 별도)으로 하되, “공단”에서 시행하는 설계 결과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종 총사업비를 확정한다.

제8조(연차별 투자계획) ① “서울시”와 “공단”은 상호 협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붙임1)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1년도 투자계획과 납부는 별도 협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실시설계 결과, 공정을 및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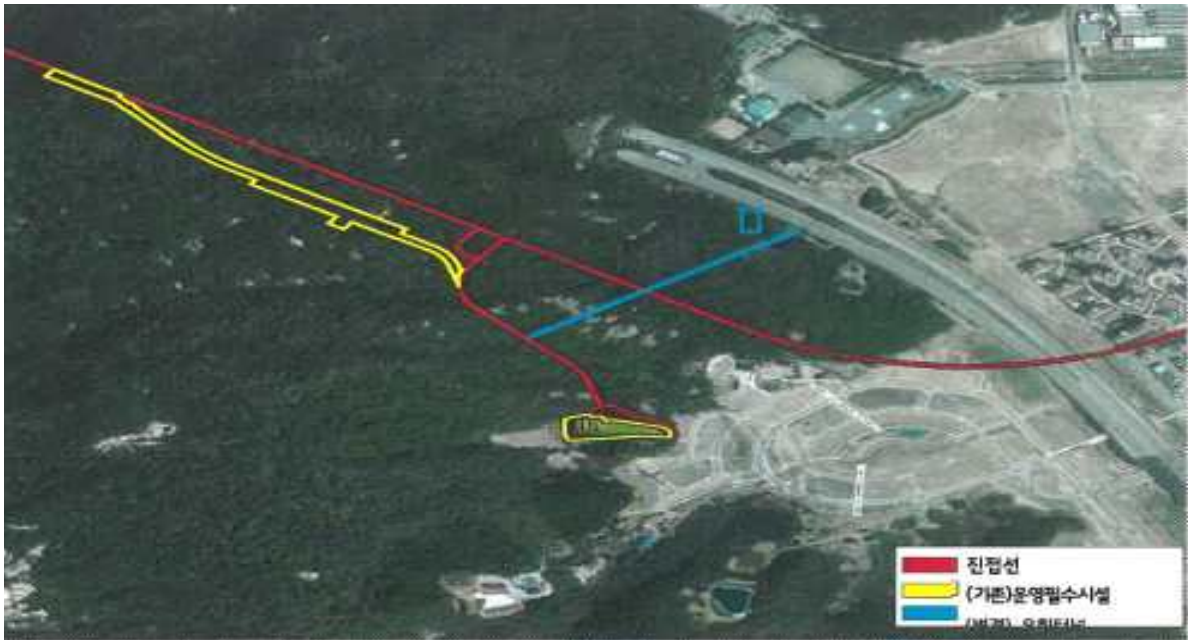
7) 시의회 동의 필요여부 사전검토('21. 1. 27, 법률지원담당관)

-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시는 이 사건 시설 설치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수탁자인 국가철도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식송마을 우회도로 신설사업이 운영필수시설 이전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⁸⁾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 간 운영필수시설의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별내 지역(식송마을)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차량의 통행 소음 등 주민피해를 해소할 목적으로 식송마을 우회도로인 전용도로(터널) 건설에 따른 신설비용(64억원)을 추가 부담하고자 함⁹⁾

※ 참고 : 우회도로 (전용도로(터널)) 신설안



- 진접선은 최초협약¹⁰⁾에 따라 본선 구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사업 추진계획(교통정책과-3001),2021.2.17

9) 전용도로(터널) 신설안

- 사업내용 : 경사갱에서 수도권제1순환도로(식송마을 반대편) 측에서 우회도로 신설 및 주재소 설치

- 추정사업비 : 64억원

- 사업규모 : 총연장 400m(단신터널 370m + 토공 30m)

10)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2015.9

- 협약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예산을 부담하고, 진접차량기지 및 운영필수시설은 기존 창동차량 기지의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필수시설 이전 합의 이후 제기된 민원에 따라 식송마을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운영필수시설에 대한 이전 합의서의 내용을 넘어선 재정지원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바, 서울시는 위·수탁협약서 체결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동의안 의결시 절차에 대한 검토의견

1) 조례에 명시된 자료 제출 여부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동의안 형식을 따르고 의안 제출시 조례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참고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관련 규정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동 동의안 제출시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협약서 및 첨부 서류사본’¹¹⁾을 제출하였으나,

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이 기재된 서류와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별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이후 협약 진행과정에서 발생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동 사업의 투자심사 선행 여부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¹²⁾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을 지방의회에 의결 요청하기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¹³⁾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11) “서울특별시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합의서” 및 “서울특별시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안)

12)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13)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임과 동시에 추정예산이 791억원으로 행정안전부에 다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대상임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법에서 명시한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의회 의결 전 선행되어야 될 절차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동 동의안은 진접선 건설사업 중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 이후 공사 착공을 위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간의 위·수탁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4호선 전구간의 유지관리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필수시설을 진접선 경사갱을 활용하여 이전·설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협약서에 정해진 수탁사업의 범위 및 규모가 유치선 및 궤도 작업장, 자재적치장, 주재소로 정해진 만큼 협약 범위를 넘어선 우회

도로 신설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동의안 제출과정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등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 규정과 달리 지방의회 의결 요청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